

# 위기의 진흥법의 한국잡지 제정만이 해법



요즘 시대가 급변하면서 위기에 처한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잡지산업의 위기감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잡지산업 전반에 폐간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지난 6월14일과 8월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잡지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는 잡지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우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는 '한국잡지협회 잡지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과 공동으로 '지식정보화시대 잡지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론회와 공청회였다.

8일 열린 공청회에는 300여명의 잡지인들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공청회를 진지하게 방청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미경 국회문화관광위원장을 비롯 여야 문화관광위원과 농림수산위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 등 국회의원만도 7명이 참석해 진흥법 제정전망을 밝게 했다.

강원회 잡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만은 신문과 방송만 진

흥이 추진되고 잡지는 소외되고 있다"면서 "미디어분야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우현 고려대언론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1주제 '잡지진흥법 개요와 주요내용' (이구현 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 제2주제 '잡지진흥법의 법적 위상' (이광재 경희대대의협력부총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김재홍 열린우리당의원, 이재용 한나라당의원, 이우성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 유경환 전문화일보논설위원장, 이용준 대진



김재윤의원, 이미경위원장, 강원희회장(왼쪽부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면. 잡지진흥법 공청에 나온 토론자들과 공청회와 함께 열린 잡지전시회 모습

대신방과교수, 남형두 변호사, 안찬수 책 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사무처장, 전철규 월간뚜르드몽드발행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잡지진흥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민족과 함께 한 잡지의 역사

1896년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에서 발행한 '친목회 회보'와 독립협회의 '대조선독립협회 회보'가 창간된 이래 올해로 잡지 역사는 109년을 맞이했지만, 잡지업계는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밝지 않은 해를 보내고 있다. 2002년까지는 창간 잡지 수가 근소하나마 폐간 잡지 수를 앞섰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역전된 이후 잡지시장은 급격히 하강 국면에 들어섰으며, 올해는 그 정도가 부쩍 심해졌다.

개화기와 일제의 강점기에는 '소년', '개벽' 등의 잡지가 계몽의식과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는 '사상계', '씨알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등의 잡지가 지식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회의 여론형성과 시대 의식을 주도해왔다.

잡지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사회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교육적·계몽적·설득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전문화, 자율화, 국제화를 이끌며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중요한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정책적 지원 미흡, 성장 한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잡지매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 더구나 요즘에 와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무료정보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대, 젊은 독자의 활자 이탈 현상 등으로 인해 잡지산업의 성장동력이 멈추고 말았다.

잡지의 휴·폐간과 만성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도 비관적이다. <2005년 한국잡지총람>을 보면, 2004년 11월30일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놓고, 발행하지 않는 잡지는 1034종이다. 이는 전체 등록 잡지 3277종 중 31.5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현재 한국의 잡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잡지의 위기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 잡지진흥법 반드시 제정돼야

현재, 대중 매체 분야는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방송법>, 도서출판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신문은 <지역신문특별지원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육성방안에 대한 법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잡지는 독자적인 법적 육성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을 위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 있어 잡지의 법적 위상과 육성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신문의 규제와 지원을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잡지는 신문의 부록수준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잡지계는 잡지산업의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잡지진흥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문, TV, 라디오, 영화와 같은 미디어들이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과 심층적인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풍부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용한 매체인 잡지가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의 균형발전적인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매체진흥을 위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잡지분야의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법제정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